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도희재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○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이에,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 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도로관리심의회 구성(안 제3조)

- 20명 이내 「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」

○ 도로관리심의회 기능(안 제4조)

-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교통소통 대책

○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(안 제6조)

-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- 당해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기간 : 2019. 11. 28. ~ 12. 4.(7일간)

○ 관련법령 : 도로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 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

○ 도로관리 심의회의 구성, 기능, 소집 및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군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